

울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단1203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 C, D, F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호

변 론 종 결 2021. 7. 7.

판 결 선 고 2021.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울산 울주군 G1)

H건물 I호에 관하여, ①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7. 7. 31. 체결한 매매계약, ②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2017. 8. 25. 체결한 매매계약, ③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2020. 6. 25. 체결한 양도계약, ④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20. 6. 25. 체결한 매매계약, ⑤ 피고 E와 피고 F 사이에 2020. 6. 25. 체결한 매매계약은 각 64,7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 피고 F은 원고에게 6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4. E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0221호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9. ‘E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2016. 7. 8. 피고 E에게 피고 B 소유의 울산 울주군 H 지상에 다세대 주상복합 1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되,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을 분양한 대금에서 충당하고 만약 분양이 되지 아니하면 미분양된 호실로써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위 공사 완료 후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는 2017. 8. 9. 같은 해 7. 31.자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17. 8. 25. 같은 날 피고 C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E은 2020. 7. 2. 같은 해 6. 25.자 피고 D와의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위 가등기를 이전받았으며, 2020. 7. 2. 같은 해 6. 2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F은 2020. 7. 2. 같은 해 6. 25.자 피고 E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C는 201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K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3,53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C는 피고 E의 전(前)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채권자인데, 피고 E은 2015. 10. 29.경부터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피고 B은 2017. 8. 9. 피고 E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겨주었는데, 피고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E이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앞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 방법에 의한 사해행위이다. 또한 피고 E, C, D 사이의 특수한 관계, 2020. 7. 2. 하루 만에 피고 F 앞으로 각 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고, 원고는 피고 E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매매계약 등 사해행위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

나아가 K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여 원고로서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인 2억 원에서 채권최고액 1억 3,530만 원을 뺀 6,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E의 채권자로서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이고, 피고들로의 소유권 이전도 모두 사해행위라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20.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채무자인 피고 E에게 회복된 이상 그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 B, C, D, E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채무자인 피고 E 역시 피고 적격이 없다.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인 피고 E과 수익자인 피고 C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될 뿐이어서 수익자와 전득자 또는 전득자들 사이의 법률행위인 피고 B, C, D, E 사이의 법률행위는 모두 취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 C, D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1227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는데,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등 사해행위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E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피고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피고 E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이 사건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B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9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하여, 원고의 대한 피고 E의 채무는 원금이 1억 5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장에서 별도로 언급한 L에 대한 피고 E의 채무도 원금이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1) 2020. 11. 1. J에서 G으로 승격하였고, 이하 같다.